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 지원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CONTENTS

건강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06
발달재활 서비스	06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0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07
장애인 의료비 지원	08
장애친화 건강검진	0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0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0
아이돌봄서비스	11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3
장애아 보육료 지원	1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4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5
장애아동 양육수당	15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6
장애아동수당	16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7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18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8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9
장애인 정보화교육	2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0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21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1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무료 법률구조 제도	24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24
의료급여 제도	25
장애수당	26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6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27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2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2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9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30
장애인연금	31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3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4
보조공학기기 지원	34

돌봄 (안전·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5
수어통역센터	3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35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36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3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39

CONTENTS

돌봄 (안전·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39
장애인 체육시설	39
장애인 활동지원	40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41
장애인 복지관	4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42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4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3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4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4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44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45

임신·출산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5
출산비용 지원	46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46

고용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47
장애인 일자리 지원	4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4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5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5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51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52
장애인가기업 종합지원센터	53
장애인 창업육성	5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5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5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56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57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57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8만 6,647원, 지역 30만 8,952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등록장애인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구분 | 1차 의료기관 | 2, 3차 의료기관 | 비고 |
|----|----------|------------|--------------|
| 외래 | 750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부담금 전액 | |
-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 장애친화 건강검진

-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건강검진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전국 16개소) 방문하여 검진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귀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6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 2.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105만 원 지원
 -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당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9,890원,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만 1,860원, 질병 완치 시까지)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만 2,000원)	7,912원	1,978원	1만 81원*	1,779원	8,895원*	2,965원
나형	120% 이하 (569만 9,000원)	5,934원	3,956원	6,523원*	5,337원	5,930원	5,930원
다형	150% 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A형 - '가, 나' / B형 - '가') 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930원 지원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일반형(시간당 9,890원)				종합형(시간당 1만 2,860원)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만 2,000원)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120% 이하 (569만 9,000원)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5,440원	7,420원	1,978원	1만 882원
다형	150% 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1,484원	1만 1,376원	1,484원	1만 1,376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	1만 2,860원	-	1만 2,860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9,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7만 8,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 불가)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 보급)

- 1. 대상** 시청각장애인(저소득층 우선보급)
- 2. 내용**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보급
- 3. 방법**
 - 시청각장애인용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시청각장애인용 TV란?

장애인 방송(자막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속도조절,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1.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면허조건(E,F,G,H,I)란?

E: 청각장애표시 및 불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2.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 3.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자주 하는 질문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의 조건 란에 E,F,G,H,I 중 하나 이상이 표시되어 있으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조건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운전인지능력평가 후 합격 유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운전면허증에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 교육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 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대상이 장애등급에서 운전면허증에 조건부여 유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9) 교육대상: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
- (2020) 교육대상: 운전면허증에 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한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3만 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가급여	교육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무료 법률구조 제도

-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93만 6,0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2.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으로 하는
경우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2. 내용** LPG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59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중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분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1. 대상**
 - 신규 등록장애인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초과 100%
(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용자추천 통지→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용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장애연금

-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0년 1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 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56/100/132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 수어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3.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 1.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대학생 우선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내용 31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육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육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장애인용의복, 전동침대
지적·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4.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 1. 대상** 만 6~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1만 원~최대 648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27만 원), 자립준비(27만 원), 보호자 일시 부재(108만 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 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 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③ 청각·언어 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 예방(절주)
 - 신체활동
 - 영양
 - 비만 예방관리
 - 구강 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여성어린이 특화
 - 지역사회중심 재활
 - 금연
 - 방문 건강관리
 - 치매관리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2. 내용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중증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 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2020년 발생분 부터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7년 발생 분 40만 원 적용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0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민간사업주 3.1%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9만 5,350원 12월: 167만 9,35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89만 7,660원 12월: 85만 1,27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8만 1,04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4만 5,700원 12월: 107만 5,64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12만 5,290원 12월: 105만 6,57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형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3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이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훈련기관에 신청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및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1. 대상 만 18세~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I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이하의 저소득층 만 18~69세 장애인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훈련참여수당 일 1만 8,000원, 월 최대 28만 4,000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	
3개월 ~ 6개월	■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30만 원, 최대 3개월) ■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12개월 근속시)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II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IBK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장애인 2,000만 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 훈련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 재활 센터	월 1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60)

—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형훈련센터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장애인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펴낸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관리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0년 5월

디자인 디자인영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